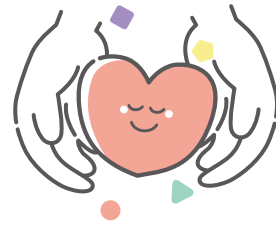


인권에 대해서

인권이란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권리이다."

누구나가 태어날 때부터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권을 훼손하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서로 인정하자

성별이나 나이, 국적이나
출신지가 달라도 모두 같은
사람.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 함께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모두가 자신답게

누구나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방해하거나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모두의 생명을 소중히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가 둘도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서로 배려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법무성 인권옹호기관에서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령
17가지 항목을 정했습니다.

- | | |
|--|---|
| 01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자 | 10 형을 마치고 출소한 사람이나 그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자 |
| 02 어린이의 인권을 보호하자 | 11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배려하자 |
| 03 고령자의 인권을 보호하자 | 12 인터넷상 인권침해를 없애자 |
| 04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자 | 13 북한의 인권침해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자 |
| 05 동화 문제(부락 차별)를 해소하자 | 14 노숙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자 |
| 06 아이누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자 | 15 성적 지향 또는 성적 정체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자 |
| 07 외국인의 인권을 존중하자 | 16 인신매매를 없애자 |
| 08 감염병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자 | 17 지진재해 등 재해가 원인인 편견과 차별을 없애자 |
| 09 한센병 환자·그 병력이 있는 사람·그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자 | |

법무성 인권상담창구 [전국 공통]

인권 전반	모두의 인권 110번	TEL 0570-003-110 【접수시간】 평일 8:30-17:15
여성	여성 인권 핫라인	TEL 0570-070-810 【접수시간】 평일 8:30-17:15
어린이	어린이의 인권 110번	TEL 0120-007-110 【접수시간】 평일 8:30-17:15
외국인	외국어 인권상담전화	TEL 0570-090911 【접수시간】 평일 8:30-17:00
	외국어 인터넷 인권상담 접수창구 https://www.moj.go.jp/JINKEN/jinken21.html#01	

부당한 차별과 인권에 관한 상담 [오кина와현]

오кина와현 인권상담창구 TEL 098-863-9281

■매주 월/수/금(공휴일 제외) 10:00-12:00 / 13:00-15:00

[mail] jinken-soudan@pref.okinawa.lg.jp

성적 지향 또는 성적 정체성에 관한 상담 [오кина와현]

LGBTQ 니지이로 상담 TEL 098-880-8434

■매주 토요일 10:00-17:00

오кина와현 어린이미래부 여성력·다이버시티추진과

TEL 098-866-2500 FAX 098-866-2589



오кина와현 HP

Q 오кина와현 차별 없는 사회 만들기 조례 검색



조례특설 HP

오кина와현 차별 없는 사회 만들기 조례

— 2023년 10월 1일 전부 시행 —

사람은 누구나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서로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면서 공생하는
마음이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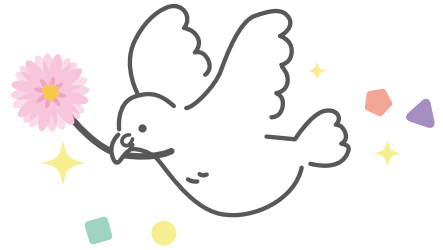
오кина와현은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DGs)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의 경위

오키나와현에서는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장소나 인터넷상에서 특정 개인 또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행해지는 특정 인종, 국적, 출신 등 본인의 의사로는 바꾸기 어려운 속성을 이유로 하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 성적 지향이나 성적 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편견이나 부당한 차별 등이 존재하고 있어, 그 해소를 위한 대처를 더욱 강력하게 사회 전체가 추진해 나가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목적

사회 전체에서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여
부당한 차별 없는 사회 형성을 도모한다.



기본이념

어떤 사람도 인종, 국적, 신조, 성별,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사회적 신분, 출신 및 그 외 사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 하에 오키나와현, 시정촌, 현민 및 사업자가 상호 연계하고 협력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부당한 차별 없는 사회 형성을 추진한다.

현·현민·사업자의 책무



현의 책무
부당한 차별이 없는 사회 형성에
관한 시책 실시.



현민의 책무
인권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과 이해를 높인다.
오키나와현이 실시하는 시책에 협력.



사업자의 책무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 부당한 차별
해소 대응을 추진.
오키나와현이 실시하는 시책에 협력.

기본방침

- 1 인권존중 이념을 보급하고, 그에 대한 현민의 이해를 심화한다.
- 2 부당한 차별에 관한 상담에 적절하고 정확하게 대응한다.
- 3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는 배경 및 기타 차별에 대한 실정을 고려하여 대응함으로써 부당한 차별 해소를 추진한다.

기본방침에 따라 오키나와현이 실시하는 시책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관한 시책

인터넷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교육 및 계발

오키나와현민임을 이유로 하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 해소를 위한 대처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 해소에 관한 조치
(표현활동의 개요 및 표현활동을 한 사람의 성명 또는 명칭 공표)

성적 지향 또는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부당한 차별에 관한 시책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 해소에 관한 조치의 흐름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 이루어졌다는
의사 표시 등을 통해 사안을 파악

"오키나와현 차별 없는 사회 만들기 심의회"에 자문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당성이 인정된 경우(답신)

표현활동을 한 사람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 부여

공표 조치

- 표현활동의 개요, 성명 또는 명칭 공표
- 나하지방법무국에 통지

※공표 조치는 계발이 목적이며 규제적 성격을 지닌 것은 아닙니다.

Q&A

Q. "부당한 차별"이란?

본인의 의사로는 바꿀 수 없는 속성 또는 개인의 특성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례에서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 과 "**부당한 차별적 취급**" 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글



음식점에 대한 입점 거부



아파트에 대한 입주 거부

Q.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란?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차별적 의식을 조장하거나 유발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그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취지를 고지하거나 일본 외 출신자를 현저히 모멸하는 등 일본 영역 외에 있는 국가 또는 지역 출신임을 이유로 일본 외 출신자를 지역사회에서 배제하는 것을 선동하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말합니다.

※인터넷상의 글도 포함됩니다.



협박적 언동



현저하게 모멸하는 언동
※차별적이고 경멸적인 의미로 곤충, 동물, 사물에 비유하는 언동



지역사회에서 배제하는 것을
선동하는 언동

혐오 발언에 대해서

특정 민족이나 국적의 사람들을 비방증상하고 사회에서 배제하려는 차별적 언동을 일반적으로 혐오 발언(헤이트 스피치)이라고 하는데, 법률상 정의가 없고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혐오를 드러낸 발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혐오 발언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줄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훼손하거나 차별의식을 낳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언동입니다. 모두가 혐오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